

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(제8조제2항 관련)

구분	청소·화장 실용수	세척·살수 용수	조경용수	친수용수	하천 등 유지용수	공업용수
총대장균군수 (개/100mℓ)	불검출	1,000이하	1,000이하	불검출	1,000 이하	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, 비고 2의 기준을 따를 것
결합잔류염소 (mg/L)	0.2이상	—	—	0.1 이상	—	
탁도 (NTU)	2 이하	2 이하	2 이하	2 이하	—	
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BOD) (mg/L)	5 이하	5 이하	5 이하	3 이하	5 이하	
냄새	불쾌하지 않 을 것	불쾌하지 않을 것	불쾌하지 않 을 것	불쾌하지 않을 것	불쾌하지 않을 것	
색도 (도)	20 이하	—	—	10 이하	—	
총질소 (T-N) (mg/L)	—	—	—	10 이하	20 이하	
총인 (T-P) (mg/L)	—	—	—	0.5 이하	0.5 이하	
수소이온농도 (pH)	5.8~8.5	5.8~8.5	5.8~8.5	5.8~8.5	5.8~8.5	
염화물 (mgCl/L)	—	—	250 이하	—	—	

비고

- 항목별 수질검사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.
-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, 타 사업장으로 중수도 원수를 이송 후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수도 원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: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
 -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: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